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1. 5. 18.(화) 14:3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1년도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18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5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20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20-19-061)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2020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은 ‘「2020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2020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자 함입니다. <3> 주요내용의 <가> 평가대상입니다. 대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은 사업자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PP 등이 해당되며, 총 154개 사업자(366개 방송국)입니다. 매체별 사업자 수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나> 평가기준입니다. 평가영역은 「방송법」 제31조제1항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내용영역에서는 프로그램의 질,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등을 평가하고, 편성영역에서는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등을 평가하며, 운영영역에서는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등을 평가합니다. 매체별 그리고 평가영역별 배점은 본문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평가배점입니다. 중앙지상파TV는 700점, 지역지상파TV·중편PP는 600점, SO·위성·보도PP·홈쇼핑PP는 500점, 지상파R·DMB는 300점입니다. 다음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평가절차입니다. 먼저 방송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방송평가지원단에는 분석·검토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방송평가 결과(안)에 대하여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사항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후 확정되어 공표됩니다. <라> 평가 결과의 활용입니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반영됩니다. <4>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6월부터 방송사 제출자료를 접수하고, 분석 및 검토를 거쳐 방송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방송평가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 평가기준이나 내용이 작년에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동일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작년에 평가를 마치면서 보완하거나 평가 틀에 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는 내용은 여기에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그런 부분은 방송평가 제도개선 연구반에서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평가내용, 평가기준 가운데 내용영역을 보면 프로그램의 질,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현황, 시청자 의견반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라디오방송이 끊임없이 정치적인 편향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방송심의 관련사항은 감점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감점될 수 있는 징계를 지적받아야 여기에 반영된다는 것이지요?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심의결과에 따라서...

○ 김효재 상임위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는 것이지요?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심의결과는 그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만드는 평가기준은 내년에 공표해서 내후년부터 적용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만든 것은 올해 공표되어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올해 연구반을 통해서 나온 사항들은 방송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이 개정되고 그 이후 방송실적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도 방송실적부터 적용되는데 내년도 방송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그 후년도에 수립됩니다. 2023년도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2022년도 방송실적이 평가될 예정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결국은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이 기준으로밖에...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아닙니다. 올해 고쳐지면 내년도 방송분부터는 고쳐진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내년에 평가하는 것은 올해 것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올해 평가는 이 기준 그대로 적용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내년도에 평가하는 올해 것도 이 기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내후년도에 나오는 기준에 따라 내년도부터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그동안에 있던 평가기준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12월 말에 본 위원회에서 방송평가규칙이 고쳐진 것이 또 있습니다. 여성 간부직 비율과 소비자원 피해구제비율은 작년에 고쳐졌기 때문에 올해 방송 평가 결과를 내년에 할 때 반영됩니다. 이미 작년에 고쳐졌던 부분이 올해 반영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시지요?

○ 김효재 상임위원

- 예. 이것은 기계적으로 가고 있는 프로세스의 한 과정 아닙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이번 방송평가는 방송법상 재허가·재승인 대상인 방송사업자에 대한 내용 편성 운영에 관한 전반적 평가입니다. 그 결과 또한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방송사업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알기에 평가에 더욱 신경을 쓰시겠지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순위나 점수에만 집착하지 말고 평가 시 도출되는 상대적 미흡 분야에 대한 점검과 보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평가위원 분들과 사무처에서는 평가의 취지인 방송의 공익성을 보장하면서도 방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시행과 함께 지금 논의되고 있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평가제도 개선(안)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제가 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저는 방송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방송의 공신력과 공익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평가과정을 통해서 방송의 자율적 규제시스템을 내실화하도록 해서 방송사 스스로 방송의 공적가치와 또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사업자가 지난 한해의 방송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 시 약 40%가 반영되는 중요한 평가입니다. 특히 올해는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서 방송평가 취지, 사업자 간 변별력, 매체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도출된 개선방안은 1차적으로는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바로 이 위원회에서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변화하는 이런 방송환경에서도 방송평가가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방송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방송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일치된 의견으로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평가대상인 방송사업자들은 법에 의해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특허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는 책임을 다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방송평가 제도입니다. 이러한 임무를 우리 위원회는 부여받았고, 따라서 위원회는 항상 방송평가 전반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방송환경 변화와 시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세부기준과 절차도 평가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선안을 만드는 작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향후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실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원안에 동의하셨으므로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2020년도 상반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결과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가> “2020년도 상반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 사유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020년도 상반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경과입니다. 2020년 10월 순수외주제작 검증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한 후에 11월 방송사는 순수외주제작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검토하기 위해 2021년 3월 중 제1차 「순수외주제작 인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사가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4월 중에 제2차 「순수외주제작 인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 관련 규정입니다. 방송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는 방송사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일정비율 이상 편성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편성비율은 고시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의무편성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사별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고시 제9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정하며, 인정기준의 주요내용은 아래의 글상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성고시 제9조의2 제5항에 따라 「순수외주제작 인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4> 2020년도 상반기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개요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2020년도 상반기에 방영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중 드라마제작사협회 등 외주제작 관련 협회가 가장(假裝) 외주제작물로 선정하거나 외주인정지원단에서 선정한 방송프로그램을 점검대상으로 하였으며, 외주제작 관련 협회, 학계, 법조계로 구성된 「순수외주제작 인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성고시 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부합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4쪽의 <5>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KBS1 '스포츠 중계석', MBC '더게임 : 0시를 향하여', SBS '스토브리그' 등 26개 프로그램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하고,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방송프로그램 제작계약서, 외주제작사·제작인력 간 계약서 등 자료를 통해 순수외주제작물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 결과,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프로그램(4건),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프로그램(3건) 등 7개 프로그램을 불인정하였습니다. 1차 인정결과 통보 후 불인정된 7건 중 4건에 대해 MBN, TV조선 2개 방송사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인력계약 관련 증빙자료 확인 등을 통해 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비한 동물퀴즈' 등 3건은 제작계약서를 확인하였으며, '모란봉클럽'은 외주제작사가 폐업함에 따라 자료 취득이 불가하여 인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SBS 특수관계자 참여 프로그램(굿캐스팅, 편의점 셋별이)의 경우 자문위원회 개최, SBS 외주제작사의견 청취 등을 통해 순수외주제작물 인정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총 26개 검증대상 프로그램 중 23개 프로그램이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되고, 3개는 불인정되었습니다. 불인정된 프로그램은 KBS2의 '신상 출시 편스토랑', MBN의 '전국민 드루와', '친한 예능 바람쐐러갈래'이며, 방송사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결과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안건을 접수해 주시면 방송통신사무소 및 해당 방송사에 순수외주 인정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KBS2의 '신상출시 편스토랑'은 어떤 형태로 순수외주제작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KBS가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제작하였는데 KBS는 담당자의 오류로 순수외주제작물로 잘못 제출했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당초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외주제작이라고 오인해서 순수외주제작으로 제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쪽에서도 실수했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은 순수외주제작비율이 만약 순수외주제작이 아닌 특수관계자가 하면 비율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비율은 일부 하락은 될 수 있지만 의무편성비율은 초과하여 달성하였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전 사업자가 다 의무편성비율은 초과하여 달성했습니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초과하여 달성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건을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통신소 사무소에 전달한 후 방송통신사무소가 최종적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의무편성비율 35%는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것인데 외주제작사와 제작한 것이라고 담당자가 착각했다는 것입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MBN의 특수관계자도 역시 그런 형태입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MBN의 경우 스페이스레빗이라는 특수관계자가 제작했는데 아무래도 종편PP의 경우 '20년도 하반기부터 순수외주제작비율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마찬가지로 일부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MBN도 이것이 불인정되어도 의무편성비율을 초과하여 달성했다는 것이지요?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접수하자는 의견이시지요?

○ 김효재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꼼꼼하게 잘해 주셨는데 저는 순수외주제작물 안전 상정 시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한번 이야기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신속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 2020년도 상반기 순수외주제작물 인정결과 안전은 2018년, 2019년도를 대상으로 했던 것에 비해 굉장히 신속하게 상정되었습니다. 2018년도 그때 상·하반기 것을 작년 10월에, 안전 상정 하는데 거의 22개월이 걸려서 그때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 상·하반기 것은 올 2월에 14개월 만에 올렸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11개월 만에 올렸습니다.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는 방송평가와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으로 반영되는 만큼 이번처럼 이렇게 인정여부에 대해서 빠른 검토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사무처에서 신속하게 잘 진행해 주셨는데 2020년도 하반기 대상 안전도 올해 안에 처리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순수외주제작물 안전 상정 시기에 대한 원칙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보시기를 권고합니다. 고생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0년 상반기 것을 올해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2020년 하반기 것을 올 하반기 내에 힘들겠지만 결과자료가 제출되면 방송평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 지속으로 외주제작사의 어려움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들은 단순히 법적의무에 따른 외주제작 계약과 편성이 아니라 상생의 마음으로 외주제작사와의 공정한 수익 배분 등에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사에서 자료제출할 경우에 두 번 제출하는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방송사와 이야기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가 늦어져서 생기는 불합리한 부분은 많이 해소된 것 같다고 보이고, 원래 순수외주제작 인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입법 취지가 외주제작의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콘텐츠 다양성 확보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질

적인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심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이런 측면들을 참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 접수에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다.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시행령 등 개정안에 관한 건인데 <보고안건 나>부터 <보고안건 마>까지 4건의 논의 내용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함께 묶어서 보고를 받고 논의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건을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혁 방송시장조사과장**

- 4건을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관련매출액의 산정기준을 과징금 부과와 합목적성과 사업자 간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대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과징금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하여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 사업자의 수용성,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현행 관련매출액 산정기준이 방송법령에서는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으로, 그리고 IPTV법령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으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징금 산정 시 연평균 매출액은 부당이득 환수라는 과징금 부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방송법령은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으며, 과징금 부과관련 고시 일부내용의 시행령 상향규정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경과입니다. ‘18년도에 티브로드 과징금 부과 시 관련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사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 등 새로운 금지행위 유형에 대한 신설이 필요하고, 방송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다르게 중대성 판단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이어서 정책연구를 2건 수행했습니다. 수행한 결과, 신유형 금지행위는 신설 관련해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을 작년 12월에 발의하였고, 이어 12월에 개정안 마련과 함께 의견수렴과 법제처의 사전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등 변경사항입니다.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관련매출액’과 ‘관련서비스’의 정의 및 위반기준 산정기준의 고려사항을 별표의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신·구조문대비표의 개정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의 <표>를 보시면 기준금액은 방송사업자 등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그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한 관련한 구체적 규정으로는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으로 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의 취득 및 피해의 종료 또는 지속여부, 위반행위의 연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에 대한 신설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에 보시면 위바꾼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미친 영향, 이용자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정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부과기준을 등 상향 규정입니다.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방송법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표>에 보시면 중대성 정도 부과기준율이 매우 중대한, 중대한, 그리고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과 함께 그 밑에 중대성 정도를 구분한 부과기준금액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보고사항>을 접수해 주시면 이어서 입법예고와 함께 규제심사와 위원회 의결 그리고 연말까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공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붙임>으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사항 다>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즉 고시에 대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 이유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중대성 정도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시행령 개정안의 과징금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현재 없습니다. 과징금 부과관련 규정의 현행화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진 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매출액 산정기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회계처리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수신료매출액, 광고매출액, 협찬매출액, 프로그램판매매출액,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등의 매출액을 통하여 관련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대성 판단기준 신설입니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 개정안 <표>를 보시면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의 고려사유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반기간 산정기준 본문 규정입니다. ‘위반기간의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의 산정근거가 되므로 고시의 본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한 산정기준 고려사항을 개정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부과기준율 및 기준금액 삭제입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기준금액을 현재 별표에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추진 일정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사항 라>가 되겠습니다. 「IPTV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 이유는 생략하고,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역시 현행 IPTV법령도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관련 고시 일부내용의 시행령 상향규정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진 경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역시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서 3가지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부과기준을 상한조정입니다. 현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을 상한을 2.5%에서 2%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과기준금액 등 상향 규정입니다. 현행 IPTV법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기준금액 및 위반기간 산정기준의 고려사항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역시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에 보시면 관련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약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금액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추진 일정은 역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사항 마>가 되겠습니다. 「IPTV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 이유는 생략하고, 현황 및 문제점으로 현행 IPTV법령에도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관련 일부내용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쪽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매출액 산정기준에 대한 정비입니다. IPTV법 시행령에서 '위반기간의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시에서 규정한 '연평균 매출액' 오류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대성 판단기준 신설입니다. 역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4쪽에 보시면 <표>에 역시 매우 중대한, 중대한, 그리고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대한 고려사유를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반기간 산정기준 본문 규정입니다. 동일하게 '위반기간의 산정기준'은 관련 매출액 산정근거이므로 고시의 본문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개정안에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에 보시면 부과기준금액 역시 시행령에 상향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시행령과 동일하게 고시도 같이 연말에 공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2018년도에 문제제기가 된 것이 이제야 정리가 된 것이지요? 2년 조금 넘게 걸렸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고치려면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정상입니까? 시간이 지체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다소 늦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조금 늦어진 것입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첫 번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3쪽, 4쪽에 보면 매출액 산정할 때 그동안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으로 하다가 위반 기간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오광혁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기간 산정이 분모가 되니까 매우 중요한데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의 취득 및 피해의 종료 또는 지속여부' 이 이야기가 위반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피해가 일어나면 그 기간까지 기간을 미룬다는 것입니까?

○ 오광혁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맞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예를 들면 행정기관이 알았는데 중단하라고 해서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어떻게 알지요?

○ 오광혁 방송시장조사과장

- 그것은 사업자에게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함으로써 그 부분은 산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기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대 5억원 내지는 중대성 각각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상한액이 있습니까?

○ 오광혁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대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가령 행정청이 처분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가 생긴 것이 있어도 그때는 한번 처분하고 나면 이것이 분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처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반기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반의 영향이 그 위반기간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렇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다음 해에 나타날 수도 있고, 몇 년 있다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위반행위로 인한 기간으로 종료일까지 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의 취득 및 피해의 종료를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피해 여부가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으나...

○ **김효재 상임위원**

- 분모의 결정이 수식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여기에 보면 다른 <표>에도 있지만 중대성의 정도에서 부과기준율이 1.2%, 1.8%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식으로 대입하면 1.5%다, 이런 것이 아니고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위원님들이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범위가 장기간이라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중대성의 정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이렇게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끝까지 넓힐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또는 중대성의 정도 이것의 큰 틀을 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이번 안건은 규제의 형평성, 안정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령 개정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또는 서비스별 칸막이식 차등 규제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우리 제5기 위원회의 정책과제인 통합적인 「시청각미디어 서비스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과징금 처분은 대표적인 침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관련법령에 명확하고 체계적인 규정을 두어 처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기통신사업 법령과 단말기유통법령 등에는 이런 원칙이 잘 지켜져 있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유독 방송법과

IPTV법에서는 금지행위 과징금 처분과 관련된 규정들을 상대적으로 정비가 안 됐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다시 정비해서 다행스럽습니다. 이번 사무처에서 해당 규정들을 체계에 맞게 정돈했는데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한층 높이고 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행령,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꼼꼼히 잘 정리해 주신 사무처 직원 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 상충되는 내용을 수정하고 규정 체계를 조정하는 등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와 같이 침익적 행위일수록 내용이 법령에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규제의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과징금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서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앞서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 상당 시간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한 방통위 소관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이 더 있다면 발굴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대로 접수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고안전 나>부터 <보고안전 마>까지 4건의 안전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전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5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1년도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10분 폐회 】